

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

심사보고서

1995. 10. 10
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5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1995년 10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('95. 10. 10)상정
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 박 경 국)

가. 제안이유

○ 도내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갖고 연구 노력하는 개인, 단체, 법인등을 명예연구소로 지정함으로써 보다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, 나아가 도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명예연구소의 운영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정요건 및 대상분야 (안 제2조)
- 지정 및 행·재정적 지원 (안 제5조 및 제6조)
- 연구성과 평가회 개최 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겸 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재평)

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,
이는 도내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노력하는 개인, 단체, 법인등
을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로 지정 지원함으로써 보다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 도민 소
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4. 그 주요 내용으로는

첫째, 지정요건 및 대상분야에 있어서는

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, 단체, 법인등 연구노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
자로 하되

- 농업분야 : 농축산 품종개발, 신품종 묘목생산, 재배기술 개선등
- 공업분야 : 새로운 기계제작, 신제품 생산등
- 관광분야 : 새로운 관광상품개발, 향토음식개발등
- 환경분야 : 폐기물 재활용, 환경오염방지, 신기술개발등으로 하고

둘째, 명예연구소 지정 운영에 따른 도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

- 명예연구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
-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·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- 연구성과평가회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주요사항으로 하며

셋째, 명예연구소 지정에 있어서는

- 명예연구소 지정은 연 2회(1월, 7월)로 하도록 했으며

넷째,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·재정적 세부지원 사항에 있어서는

- 예산범위내에서의 기술개발비 및 운영비 지원
- 명예연구소와 산·학·연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계
- 우수 명예연구소에 각종 시험사업 또는 용역의뢰
- 필요한 정보, 자료제공
- 각종 정책자금용자 및 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등으로 하였고

다섯째, 연구성과 평가회에 있어서는

-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말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하고
- 평가결과 우수 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도록 하되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여섯째,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해제에 있어서는

- 명예연구원 사망 또는 타시도 이주시
- 명예연구소에서 해제를 원할시
- 연구실적이 미흡할시는 지정된 명예연구소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등

농업 및 각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보급, 장려를 통하여 도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의 운영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 :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읍성, 단양등 현지를 답사한 바 있는데 그때 느낀바로는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

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꼈음. 그중 사무실 내지는 연구장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과 소규모의 연구등이라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부

- 답변 : 조례가 제정되고 내부지침을 마련할 시 현지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여 나가도록 하겠음. (기획관 박 경 국)
- 질의 : 연구소 지정 신청을 연 2회(1월과 7월)로 하되 1개월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1월의 경우는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7월의 경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, 신청기간을 3개월 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
- 답변 : 신청기간을 3개월로 할 경우 심사기간을 포함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고 1개월 정도면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름. (기획관 박 경 국)

5. 토론요지 : 없 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8명, 찬성 8명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8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 조례안